

# 의용소방대 정년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836
----------	-----

2023년 6월 19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5월 30일, 박영한 의원 외 44명
- 나. 회부일자 : 2023년 6월 5일
- 다. 상정일자 : 제319회 정례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23년 6월 19일 상정, 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박영한 의원)

### 가.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 발의, 2023.04.10.)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 및 중앙정부 등에 강력히 촉구함.

### 나. 주요내용

- 전국의 약 10만 의용소방대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관장하는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조직으로, 1915년 8월부터 지역공동체의 안전을 수호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음.

- 의용소방대법이 2014년 제정될 당시, 의용소방대 정년을 63세에서 65세로 연장하였으나, 최근 고령화와 기대수명의 연장(1970년 62.3세 → 2021년 83.6세, 통계청) 등으로 의용소방대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대두됨.
- 특히 최근 산불피해가 반복되는 농촌 지역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46.8%로 급증하였고 기대수명은 연장되고 있으므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연장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소방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국회에서 계류 중인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정부와 국회에 촉구함.

#### 다. 이송처

-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장관), 소방청(청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및 소속 국회의원실

### 3. 검토보고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 ■ 개요

- 본 건의안은, 의용소방대가 소방대원들과 함께 지역의 안전을 지키는 활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상위법령에서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65세로 정하여 활동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는바,
  - 급격한 고령화 등의 시대변화에 맞추어 신체가 건강하여 활동에 문제가 없는 대원들은 정년 연장을 통해 지속적으로 활동이 가능하도록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건의하는 사안임.

#### ■ 의용소방대 연혁 및 운영현황

- 의용소방대<sup>1)</sup>는 1954년 전국적으로 조직되었고 1958년에 「소방법」 제정으로 그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음.
- 서울시의 경우 1972년에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가 제정되었고 2005년에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함)로 개정되어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음.
- 2023년도 기준 ‘서울시 의용소방대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소방서 및 안전센터별로 설치된 의용소방대는 총 199대 4,980명이 구성되어 활동 중에 있음. ([표] 참조)

---

1) 의용소방대는 해당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 가운데 희망자로 구성되는 비상근 소방대로서 주로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등을 수행하고 있음

[표] 2023년 서울시 의용소방대 운영현황

구 분	내 용
연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54. 1월 전국적으로 의용소방대 조직</li> <li>○ 1958. 3월 소방법 제정 시 의용소방대 설치근거 명시</li> <li>○ 1972. 12. 20.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제정</li> <li>○ 2008.1월 소방기본법에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설치근거 신설</li> <li>○ 2014. 1. 28.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법률”제정 공포(7월29일 시행)</li> </ul>
조직운영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직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총 3,940대, 총 95,208명으로 구성 활동 중</li> <li>- 서울시 총 199대 4,980명으로 구성 활동(정원) / 현원 4,495명</li> </ul> </li> <li>○ 출동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2. 12월말 총 14,870회, 연인원 47,504명 출동하여 소방업무 보조</li> </ul> </li> <li>○ 봉사활동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2. 12월말 총 1,127회, 연인원 2,877명 참여하여 봉사활동 전개</li> </ul> </li> </ul>
예산확보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편성구분 : 시 예산을 각 소방서별로 편성</li> <li>○ 예산현황 : 총 31억 3천 9백만원('23년)</li> </ul>

- 이들의 활동 실적은 2022.12월말 기준으로 총 14,870회 출동하여 연인원 47,504명이 소방업무를 보조하였고 이 같은 고유 임무수행 이외에도 봉사활동 등으로 총 1,127회(인원 2,877명)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서울시 의용소방대 소방업무보조 세부실적 현황 (2022. 12월말 기준)

구분	계	화재진압 업무보조	구조구급 업무보조	화재예방 업무보조	각종행사 안전지원	주민안전 지원활동	화재예방 홍보 등
건수	14,870	965	107	6,407	445	2,191	4,755
인원	47,504	1,302	495	16,402	2,946	9,444	16,915

[표] 서울시 의용소방대 봉사활동 세부실적 현황(2022. 12월말 기준)

구분	계	독거노인돕기	장애인시설봉사	자연보호	불우이웃돕기	기타
건수	1,127	747	123	6	149	102
인원	2,877	1,126	827	145	360	419

- 또한 의용소방대 조직 운영현황을 직위별로 살펴보면, 총 4,495명 중 대장 28명, 부대장 34명, 지역대장 113명, 부장 89명, 반장 543명, 대원 3,688명이 활동 중에 있으며,

[표] 서울시 의용소방대 조직 운영 현황

(단위:명)

구분 \ 직 위	계	대장	부대장	지역(전문)대장	부장	반장	대원
계	4,495	28	34	113	89	543	3,688
본대 의용소방대	1,637	28	34	0	89	53	1,433
지역 의용소방대	2,313	0	0	83	0	412	1,818
전문 의용소방대	545	0	0	30	0	78	437

- 연령대별 활동 현황을 보면, 30세 이하가 1.1%, 40세 이하가 3.1%, 50세 이하가 20.0%, 60세 이하가 57.6%, 61세 이상이 18.2%를 차지하고 있음.

[표] 서울시 의용소방대 연령대별 활동 현황

(단위:명)

구분	계	21~30세 이하	31~40세 이하	41~50세 이하	51~60세 이하	61세 이상
총원	4,495	48 (1.1%)	141 (3.1%)	898 (20.0%)	2,587 (57.6%)	821 (18.2%)
남자	1,251	22	62	238	736	193
여자	3,244	26	79	660	1,851	628

## ■ 의용소방대 정년 연장 촉구 관련

- 동 건의안은 고령인구 증가 등 시대변화에 맞추어 의용소방대의 정년을 65세에서 연장(70세)하는 내용을 담은 정점식 의원이 대표 발의('23.04.10.)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개정안'이라 한다)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서,
-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제5조는 의용소방대의 정년을 65세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인구수 및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70세로 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 발의, 2023.04.10.)」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정년)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단서 신설>	제5조(정년) ----- ---. <u>다만, 인구 수 및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70세로 한다.</u>

- 의용소방대는 재난현장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평상시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소방장비 활용 방법과 화재·구조·구급 대응기술 등을 습득하고 있으며,
- 근무지역에서 오랜 기간 활동으로 지역 특성 및 이해도가 높아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보조 인력

으로서 충분히 인정을 받고 있음.

- 이처럼 지역에서 활동하는 의용소방대의 역할, 전문성, 적응력, 교육 및 훈련 현황 등과 더불어 고령인구 및 노동가능인구의 연령 비율도 동반하여 상승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의용소방대의 정년연장 필요성은 공감되는 부분이라 하겠음.
- 또한, 의용소방대 정년 연장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각 지역조직의 목표와 우선순위, 인력 상황, 지역 사회의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사안인데 본 건의안에서 처리를 촉구하고 있는 개정안 역시 지역 여건을 고려해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적절하다 여겨짐.
- 참고로, 의용소방대 정년연장과 관련하여 건의안에서 요구하고 있는 개정안 이외에도 2건이 발의되어 현재 국회 계류 중에 있으며 정년으로 정하는 나이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음.

[표] 의용소방대원 정년 연장 관련 국회 발의 중인 법률

연번	발의의원	발의일자	처리현황	정년연장 관련 내용
1	정점식의원	23.04.10.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중 회부일(23.4.11.)	65세로 하되, 인구수 및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70세로 연장
2	김철민의원	23.04.14.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중 회부일(23.4.17.)	65세에서 67세로 연장
3	송재호의원	23.04.18.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중 회부일(23.4.19.)	65세로 하되,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전원 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의용소방대 정년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박영한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836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05월 30일

발 의 자: 박영한, 강석주, 경기문, 고광민, 구미경, 김규남, 김동욱, 김영옥,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재진,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형재,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민병주, 박상혁, 박 석, 박춘선, 서상열, 소영철, 송경택, 신복자, 심미경, 유만희, 유정인, 윤기섭, 윤영희, 윤종복, 이병운, 이상욱, 이종배, 이종태, 이종환, 임춘대, 장태용, 최민규, 최유희, 최호정, 홍국표, 황철규  
의원(45명)

## 1. 주문

- 서울특별시의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 발의, 2023.04.10.)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 및 중앙정부 등에 강력히 촉구 함.

## 2. 제안이유

- 전국의 약 10만 의용소방대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관장하는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조직으로, 1915년 8월부터 지역공동체의 안전을 수호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음.

- 의용소방대법이 2014년 제정될 당시, 의용소방대 정년을 63세에서 65세로 연장하였으나, 최근 고령화와 기대수명의 연장(1970년 62.3세 → 2021년 83.6세, 통계청) 등으로 의용소방대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대두됨.
- 특히 최근 산불피해가 반복되는 농촌 지역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46.8%로 급증하였고 기대수명은 연장되고 있으므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연장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소방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국회에서 계류 중인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정부와 국회에 촉구함.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 이송처

-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장관), 소방청(청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및 소속 국회의원실

# 의용소방대 정년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서울특별시의회는 국회에서 계류 중인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 발의, 2023.04.10.)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

전국의 약 10만 의용소방대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관장하는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조직으로, 1915년 8월부터 지역공동체의 안전을 수호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의용소방대는 1935년 5월에는 수방단이 조직되어 수방 업무는 제외되었으나, 해방 이후 1958년 3월 11일에 제정된 「소방법」에 의해, 서울특별시·시·읍에 의용소방대를 구성하여 소방서장의 소방·수방 업무를 보조하게 됐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이 2014년 별도로 규정되면서 현재까지 국가 및 지방의 소방공무원을 지원하는 의용소방대원으로서 활약해 오고 있다.

의용소방대원은 화재 발생 등 필요시에만 소집되어 소방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하며 평소에는 생업에 종사하지만, 필요한 경우 전업 의용소방대로 구성된 전담대를 설치할 수 있다.

그 밖에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집회, 공연 등 각종 행사장의 안전을 위한 활동, 화재 예방 홍보, 주민 생활의 안전을 위한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의용소방대법이 2014년에 제정되면서 기존의 의용소방대 정년을 63세에

서 65세로 연장하였으나, 최근 고령화로 인해 고령인구 비율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농어촌지역은 의용소방대원의 모집과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반복되는 산불 참사를 감시하거나 순찰하는 등 ‘화재 경계 근무’ 또한 의용소방대의 임무이다. 특히 산불이 잦은 농촌의 경우, 의용소방대원이 절실한 때인데,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지원자를 모집하기가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농촌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46.8%, 2021년, 통계청)

또한 기대수명의 연장(1970년 62.3세 → 2021년 83.6세, 통계청) 등으로 의용소방대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데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건강 상태가 양호하며 의소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봉공 정신이 강한 주민은 누구나 의용소방대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용소방대법」 제5조에서 정년을 65세로 제한함에 따라, 이후에는 활동할 수 없다.

소방청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의용소방대 정원 연장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으로, 조속히 해당 법률을 개정하여야 한다. 전국의 의용소방대원이 경험과 전문성을 이어가며, 봉사를 통해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국회 및 관련 정부 기관은 의용소방대법 개정을 통해 의용소방대 정년을 시급히 연장하라.

2023. 5.

서울시의회 의원 일동